

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- 422호

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9년 5월 9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



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공개경쟁 모집의 원칙을 조례에 명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위탁계약을 추진하고,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명시함(안 제3조제4항)
- 나. 홈페이지 행사 운영기준 구체화(안 제16조제2항)
- 다.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강화 규정 구체화(안 제20조제2항)
- 라. 그 밖에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항 및 용어 정비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(참조: 디지털 정보과, 전화: 02-450-7226, FAX: 02-3425-1733, E-mail: woni86@gwangjin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, 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